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8. 2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8. 31.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총무과장 조만호】

가. 제안이유

한시기구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한시기구(마포1번가연구단) 연장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 한시정원(3명) : 5급 1명, 6급 이하 2명
 - 연장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개정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마포구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및 주요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마포구 총 정원 1,448명으로 한시기구인 마포1번가 연구단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3명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부칙 제1조(시행일)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과 제2조(한시정원)에 일반직 정원 중 본청 소속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의 한시정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임.

- 본 개정안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특성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 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싱크 탱크 역할을 하는 특화 조직의 필요성과 지역단위 사업 증가에 따라 자치구 고유한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 정책 연구·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마포1번가 연구단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5)에 근거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한시정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다만, 정책 연구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및 자료를 해당 부서와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육아 휴직으로 인한 일선 실무부서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기존 부서와의 역할 중복과 정책 혼선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8. 기타: 없음

 처음으로